#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455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오세희·이병진·허성무

김태년 · 김태선 · 전진숙

황 희·김동아·김현정

김우영 · 정진욱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개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전기재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로 상향하되,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법률 제 호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제5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
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	①
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	
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	
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	
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	
허가신청 • 변경등록신청 • 변경	
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	
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	
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	
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 9. (생략)
- ② ~ ④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 2. ~ 10. (생략)
- ②·③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 지 아니한 자
- 2. ~ 10.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